

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
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
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



구 미 시

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월케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「장애인복지법」상 ‘장애등급’이 ‘장애정도’로 개정되어 장애등급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구미시 장애인 월케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등급 명시 조문 개정

- 1) “장애등급 1~3급 장애인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“장애등급 4~6급 장애인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”으로 변경
- 2) “장애등급”을 “장애정도”로 변경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장, 신산업정책과장, 노동복지과장, 관광진흥과장, 체육진흥과장, 아동보육과장, 산림과장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

제1조(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2조(「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1~3급 장애인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1~3급 장애인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를 아래의 별표2와 같이 한다.

제5조(「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「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제1급에서 제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구미시 장

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1~3급 등록 장애인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구미시 자연휴

양림 관리·운영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”을 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「구미에코

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4를 아래의 별표4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					
1. 인적사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주소					
장애명			장애정도		
수급유형	☐ 국민기초수급자 ☐ 차상위계층 ☐ 일반				
2. 수리 신청내용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보장구 유형	☐ 휠체어 ☐ 전동휠체어 ☐ 전동스쿠터				
수리가 필요한 부위			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		
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○ 목적 :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○ 항목 : 신청인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장애명, 장애정도, 수급유형, 보장구유형 ○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간 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동의 ☐ 미동의 ☐			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구 미 시 장 귀하					
				수수료	
				없음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					
1. 장애인 인적사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성 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주 소					
장애명			장애정도		
수급유형	☐ 국민기초수급자 ☐ 차상위계층 ☐ 일반				
2. 수리 신청내용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보장구 유형	☐ 휠체어 ☐ 전동휠체어 ☐ 전동스쿠터				
수리가 필요한 부위			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.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직인 확인자 : 읍면사무소·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: (서명 또는 인) (○ ○ 수리센터장) 귀하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3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

업체명 :

기간 : . . . ~ . . .

[illegible]

297mm×210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[별지 제4호서식]

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완료 확인서					
1. 수리센터내역					
업체명			대표자		
주 소				전화번호	
수리 기사명			수리기사 자격증 번호		
2. 장애인 인적사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성 명		생년월일		연락처	
주 소					
장애명			장애정도		
수급유형	☐ 국민기초수급자 ☐ 차상위계층 ☐ 일반				
3. 보장구 수리내역(해당란에 ☒ 표시)					
보장구 유형	☐ 휠체어 ☐ 전동휠체어 ☐ 전동스쿠터				
수리 및 교체부위	수리비용 산출내역		청구금액		
			천원		
「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		
년 월 일 수리업체 : (서명 또는 인) 구 미 시 장 직인 확인자 : 읍면사무소 ·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: (서명 또는 인) 구 미 시 장 귀하					
※ 구비서류					수수료
1. 보장구 수리 사진 1부					없음
2. 거래명세서 1부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이용료 감면율(제9조 관련)

구분	감면율(%)	비고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단,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	100	전통가옥체험관 에 한함
2.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생계·주거급여대상자, 한부모가족	50	
3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(1가정 1실에 한함)	50	
4. 구미시민	20	
5.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20	
※ 비 고		
-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 - 이용료 감면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을 따른다. -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. 가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다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라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-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생계·주거급여 대상자를 말한다. - 한부모가족이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. -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,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 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		

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, 체험활동비 감면(제8조 관련)

구 분		감 면 율	비 고
생태탐방 모노레일 이 용 료	- 구미시민	50%	
	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	60%	
	-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	60%	
	- 장애인	60%	
	- 국가보훈대상자	60%	
	- 홍보행사 등의 수상자(당첨자)	100%	※ 무료쿠폰지급 - 1회 무료/3회 수상
체험활동비 (수강료)	- 구미시민	50%	
	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	100%	
	-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	100%	
	- 장애인	100%	
	- 국가보훈대상자	100%	

※ 비 고

-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
-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.
-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제26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.
-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
-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정도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을 따른다.
- 국가보훈대상자란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.
-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 ①"장애인"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"신체적 장애"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2. "정신적 장애"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"법정대리인등"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소관 실·과		노인장애인과
입 안 자	과 장	안 진 희
	담 당	강 명 천
	담 당 자	이 근 진 (480-5174)